제 6 장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황윤재* · 최지현** · 이계임***

목 차

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
   1.1. 운영 현황
   1.2. 국내 동향
   1.3. 해외 동향
2.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실태 평가
   2.1.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2.2. 원산지 표시 실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이용실태 평가
   3.1. 표시 이용실태 및 인식
   3.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평가
4. 시사점
   4.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4.2.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와 국가 수 조정
   4.3. 원료 원산지 표시 예외조항 개선
   4.4.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jhwa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hchoi@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lkilki@krei.re.kr

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

1.1. 운영 현황

○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1993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출입품은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199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농산물품질관리법」)이며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상의 기준·분류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현재 211개 품목이 적용 대상품목이다. 커피, 주류, 당류, 식염은 표시 예외 품목이다.

표 6-1.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단위: 개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과자류(포장된 것, 12개 품목), 아이스크림제품류(3), 유가공품(16), 식육제품(2), 통·병조림(15), 두부류(7), 식용유지류(21), 다류(4), 음료류(5), 면류(10), 특수용도식품(5), 조미식품(15), 인삼제품류(12), 김치·절임식품(9), 기타식품류(20), 단순가공품(8)
나. 건강기능식품공전 정의 품목
영양보충용 식품(1), 인삼제품(4), 홍삼제품(4), 로얄젤리제품(3), 화분제품(4), 효소함유제품(4), 배아유제품(4), 배아제품(5), 포도씨유제품(2), 식물추출물발효제품(1), 버섯제품(2), 알로에제품(9), 매실추출물제품(2), 프로폴리스제품(2)

주: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등임.

○ 국내가공품 원산지표시는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 또는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원료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원료도 표시 대상이다.

- 물, 식품첨가물, 당류, 식염은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산지 표시는 국산원료는 '국산', '국내산' 또는 시·군명,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그러나 특정 원료에 사용되는 원산지와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다<표 6-2>.

○ 2008년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적발은 총 732건이 있었다. 이 중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8건(1.1%), 수입산 원료 458건(62.6%), 국산과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266건(36.3%)이었다. 수입산 원료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혼합원료의 경우 국산과 중국산 혼합원료를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표 6-2.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구분		주요 내용
표시위치		·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 ·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
글씨크기		· 포장 표면적에 따라 8~20포인트 이상 · 표시가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글씨색깔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 ·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라벨지 등 이용 가능
복합원재료		· 원료농산물을 환산하여 원산지 표시
혼합원료		·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 표시
예외조항	혼합비율	·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 표시
	'수입산' 표시	· 수입원료 사용시 최근 1-3년간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되거나 최초 1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료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1.2. 국내 동향

○ 2008년 중국산 수입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9월 25일 식품안전관리대책을 통해 '수입산' 원료의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인 의견 수렴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확대,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 및 혼합비율 생략 규정 개선, '제조국' 표시 도입 등이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업계 등 관련인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 현재 2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확대와 표시 예외 품목의 조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의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 표시로 전환하고, 혼합비율 생략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2008년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수입된 '새우깡'의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소비자의 가공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원료 원산지 외에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해외 동향

1.3.1. 일본

○ 일본은 가공식품의 원료가 다양화·글로벌화되고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2001년 단순가공식품 8개 품목에 대해 원료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20개

식품군을 대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20개 식품군에 녹차음료와 낙화생이 추가되었다.

○ 표시대상 식품은 원산지에서 유래되는 원료의 품질 차이가 가공식품의 품질에 크게 반영된다고 인식되는 품목으로, 제품 원재료 중에서 단일 농축산물의 중량비중이 50% 이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커피, 주류, 당류, 식염은 우리나라와 같이 원산지 표시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다.

○ 표시는 원칙적으로 일괄표시부분에 기재하고, 일괄표시부분 표시가 곤란한 경우 일괄표시부분에 표시장소를 표시, 다른 장소에 기재할 수 있다. 표시는 印字, seal 등도 가능하며, 본 상품에 사용된 원료원산지명에 ○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6-3.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	품목 설명
1	건조버섯류, 건조채소 및 건조과실
2	염장버섯류, 염장채소 및 염장과실
3	삶거나 찐 버섯류, 채소, 두류
4	이종혼합해서 자른 야채, 이종혼합해서 자른 과실과 그 외 야채, 과실
5	녹차 및 녹차음료
6	떡
7	칼집 난 낙화생(땅콩), 낙화생, 낙화생 및 두류
8	곤약
9	조미식육
10	삶거나 찐 식육 및 식용조란(鳥卵)
11	표면을 구운 식육
12	튀김용으로 튀김옷을 입힌 식육
13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혼합해 분쇄한(기계로 간)고기와 기타 이종혼합된 식육
14	소(素)건어물류, 염건어물류, 쪄서 말린 어패류 및 다시마, 말리거나 구운 김, 기타 말린 해조류
15	염장 어패류 및 염장 해조류
16	조미한 어패류 및 해조류
17	삶거나 찐 어패류 및 해조류
18	표면을 구운 어패류
19	튀김용으로 튀김옷을 입힌 어패류
20	4와 13에 포함되지 않은 생선식품의 이종혼합

주: 상기의 20개 품목은 제품의 원재료 중 단일 농축수산물의 중량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임. 20개 식품군은 일본표준상품분류(총무성)에 근거해 제정됨.

○ 복수 원산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중량 비중이 많은 순으로 기재한다. 3개국 이상의 원료가 혼합되는 경우 중량이 많은 순으로 2개국을 기재하고 그 외는 '기타' 로 기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원산지별 원재료 비중이 자주 바뀌는 경우 동일지역(북미지역, 남미지역)내 생산에 한해서 실제 원료로 사용할 예정인 원료의 원산지명을 원산지로 차례대로 기재한다. 단 이 경우 제조일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및 원료중량 비중 등의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1.3.2. 기타 국가

○ 미국과 EU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스위스가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미국

○ 미국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반규정은 "통상무역법(Commerce and Trade Act)"에 명시되어 있다. 2002년의 "농업법(Farm Bill)"과 "추가세출승인법안(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서는 2004년 9월 30일부터 소매점에서 포장상품의 원산지표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에 집행이 유예되어 2008년 9월 이후로 시행이 연기되다가, 2008년에 발생한 수입 토마토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등으로 원산지 표시 실시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업계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본격적인 시행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이루어졌다.

○ 원산지 표시는 '신선 또는 냉동 과채류를 취급하며 연간 매출액이 최소 23만 달러 이상인 소매업소'에 의해 적색육(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염소고기)의 근육살 및 분쇄육, 자연산 및 양식산 어류와 패류, 신선 및 냉동 과채류, 견과류(땅콩, 피칸, 마카다미아 너트), 인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입 어패류를

미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원료 원산지와 가공지(미국)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입어패류와 미국산 어패류가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된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 유럽연합

○ 유럽연합(EU)은 "식품 표시 지침(Food labelling directive 2000/13/EC)"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 대상은 EU 역세권 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어패류, 일부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와인, 꿀, 올리브 오일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가금육 등 특정 선포장식품(pre-packaged food)이다.

○ EU 회원국은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통특산품인증제도와 지리적표시제도 등에도 원산지 표시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EU의 원산지 표시제는 EU의 역세권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스위스

○ 스위스는 "식품법(Lebensmittelgesetz)"을 근거로 특정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종 식품에 원재료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식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원재료의 산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식품의 명칭 또는 기타의 표시에 있어서 원료의 원산지가 식품의 원산지로 표기된 나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스위스산' 표시는 전부 스위스에서 제조되거나 산출된 경우와 식품이 스위스에서 충분한 가공을 통해 그 특징적인 성질을 획득하였거나 새로운 물건 명칭을 획득한 경우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지의 표기를 통해 원재료 또는 재료의 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또는 재료의 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의 산지가 불명확하거나 산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 원재료 또는 재료가 유래한 가장 근접한 지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최종 식품에 원재료의 비율이 50%를 넘고, 식품에 표기된 산지와 원재료의 산지가 일치하지 않고, 식품의 명칭 또는 기타의 표기에서 원재료가 식품의 산지로 표기된 나라에서 유래되었음이 시사되는 경우 식품의 원재료의 산지는 재료표기에 표시한다. 또한 비포장으로 판매되는 육류, 육류가공물도 유추하여 재료표기에 표시한다.

2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실태 평가[1)]

2.1.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 가공식품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63.4%의 업체가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시제가 필요한 주요 이유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64.8%)과 불안감 해소(30.8%)가 제시되었다.

-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 취지의 하나인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본 업체는 2.2%에 불과하였다.

1) 전국적으로 147개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 가공식품업체는 식품공전상의 기준·분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생산품목의 분포는 조미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35개(17.6%), 어묵 32개(16.1%), 두부류 25개(12.6%), 음료류 23개(11.6%), 과자류 17개(8.5%), 면류 16개(8.0%), 다류 14개(7.0%), 유가공품 7개(3.5%), 식용유지류, 김치절임식품류와 특수용도식품이 각각 4개(2.0%), 아이스크림류, 식육제품, 인삼제품류, 떡류가 각각 3개(1.5%), 기타 6개(3.0%)였다. 월평균 매출액은 5천만원 미만 32개(27.2%),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1개(14.3%),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43개(29.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6개(10.9%),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8개(5.4%),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개(27.2%), 50억원 이상 5개(10.2%)업체였다.

표 6-4.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단위: 개, %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5(3.4)	6(4.1)	42(29.0)	76(52.4)	16(11.0)	145(100.0)

표 6-5.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 이유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59(64.8)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28(30.8)
국내 농업 보호	2(2.2)
기타	2(2.2)
합계	91(100.0)

○ 가공업체들은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60.7%). 이 밖에도 가공업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54.1%),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53.4%),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는데 어느 정도 기여(51.4%)한다고 생각하였다.

표 6-6.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식품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기여도

단위: 개, %

구분	전혀 기여 안함	기여하지 않는 편임	보통	기여하는 편임	매우 기여함	합계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섭취	5 (3.4)	17 (11.6)	49 (33.6)	62 (42.5)	13 (8.9)	146 (100.0)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	5 (3.4)	14 (9.6)	48 (32.9)	61 (41.8)	18 (12.3)	146 (100.0)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6 (4.1)	10 (6.8)	52 (35.6)	67 (45.9)	11 (7.5)	146 (100.0)
소비자 선택권 보장	3 (2.1)	8 (5.5)	46 (31.7)	68 (46.9)	20 (13.8)	145 (100.0)

2.2. 원산지 표시 실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2.2.1. 대상 품목

○ 60.5%의 업체가 현재 211개 품목에서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축소 의견은 생산 품목에 상관없이 일정하였다.

-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자주 먹는 식품(20.8%), 소비량이 많은 식품(18.8%),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16.9%) 등을 주로 제시하였다.

표 6-7.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조정 여부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가 꼭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	89(60.5)
대상 품목수를 확대해야 한다	23(15.6)
현행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24(16.3)
잘 모르겠다	11(7.5)
합계	147(100.0)

표 6-8. 원산지 표시 필요 품목

단위: %

구분	비중
자주 먹는 식품	20.8
소비량이 많은 식품	18.8
가공식품 원료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품	10.0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	16.9
가공공정이 단순하여 원료 농수축산물에 가까운 식품	7.3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가공식품의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식품	16.4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품목	9.5
기타	0.2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3+2순위×2+1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의 비중을 계산함.

○ 현재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인 커피, 주류, 당류, 식염 등에 대해서는 식염이 53.8%로 적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 밖에 커피(47.6%), 주류(44.4%), 당류(39.4%)순이었다.

표 6-9. 예외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가 없는 편임	보통	필요가 있는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커피	13(8.8)	29(19.7)	40(27.2)	33(27.2)	30(20.4)	145(100.0)
주류	8(5.6)	29(20.1)	43(29.9)	30(20.8)	34(23.6)	144(100.0)
당류	16(10.9)	28(19.0)	43(29.3)	34(23.1)	24(16.3)	145(100.0)
식염	11(7.5)	21(14.3)	34(23.1)	37(25.2)	42(28.6)	145(100.0)

2.2.2. 표시 대상 원료 수

○ 생산품목에 상관없이 가공식품업체의 73.3%가 대체적으로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6-10.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 없음	6(4.1)
주원료 위주로 표시하는 현행대로 추진 필요	107(73.3)
현행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	12(8.2)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	21(14.4)
합계	146(100.0)

2.2.3. 혼합원료

○ 응답업체 중에서 동일원료에 대해 3개국 이상의 혼합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반수 이상인 61개(41.8%)였다. 이들 업체의 45.0%는 현재의 혼합원료에 대한 2개국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품목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업체의 62.5%는 1개국만을 표시하는 데에 찬성하였다.

표 6-11. 혼합원료 사용 제품의 현행 표시대상국 개수의 적절성

단위: 개, %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7(11.7)	9(15.0)	17(28.3)	25(41.7)	2(3.3)	60(100.0)

2.2.4. 예외조항

■ 혼합비율 생략

○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 국명만을 표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 중 52개(36.6%) 업체였다. 이들 업체 중 40%는 해당 규정이 적절하다고 한 반면 적절치 않다고 한 업체는 절반 수준인 20%에 불과했다. 품목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두부류와 어묵류 생산업체의 경우 각각 50.0%, 36.4%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평균적으로 높았다.

표 6-12.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

단위: 개, %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3(6.0)	7(14.0)	20(40.0)	16(32.0)	4(8.0)	50(100.0)

■ 수입산 표시

○ 조사대상 업체 중 사용원료에 대해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82개 업체(55.8%)였다. 이들 업체 중에서 ‘수입산’표시를 ‘수입국가명’ 표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54개 업체(65.9%)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품목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표 6-13.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단위: 개, %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40(48.8)	14(17.1)	14(17.1)	9(11.0)	5(6.1)	82(100.0)

○ 월 매출액별로 ‘수입산’ 표시 규정을 전환할 경우 선호하는 방안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 10억원 이상인 경우 ‘수입국가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6-14.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가장 수용 가능한 방안(월 매출액 별)

단위: 개, %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45.7	38.7	17.9
‘수입국가명’을 유통기한과 함께 별도로 인쇄한다.	17.1	16.2	6.0
‘수입산’표시를 유지하고 홈페이지에 ‘수입국가명’ 공개	17.1	22.5	31.3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모두 열거한다.	14.3	19.8	37.3
없음	5.7	2.7	7.5
합계	100.0	100.0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의 비중을 계산하였으며 중복응답을 포함한 결과임.

표 6-15.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즉시 적용 가능성

단위: 개, %

매우 어려움	어려운 편임	보통	가능한 편임	매우 가능함	합계
38(84.1)	26(32.9)	9(11.4)	6(7.6)	-	79(100.0)

표 6-16. 표시규정을 즉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표시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의 변경이 어렵다	10(15.6)
표시방법을 전환하는 데 비용 부담이 크다	39(60.9)
원료 수입선의 전환이 단시간에 어렵다	10(15.6)
원료 수입선의 선택권이 없다.	4(6.3)
수입국이 수시로 변경된다.	1(1.6)
합계	64(100.0)

2.2.5. 기타 표시개선 사항

■ 제조국가 표시

○ 수입산 원료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서 가공 및 반가공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31개 업체(21.5%)였다. 매출액 유형별로는 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대체적으로 제조국가 표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보다 많았다.

○ 해당 제품 생산업체는 32.3%가 식료품의 원산지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공지와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0%의 업체가 찬성하였다.

표 6-17. 다른 국가에서 가공 ·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 표시에 대한 의향 (월 매출액별)

단위: 개, %

구분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치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1억원 미만	-	2(22.2)	1(11.1)	6(66.7)	-	9(100.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23.1)	3(23.1)	3(23.1)	4(30.8)	-	13(100.0)
10억원 이상	3(33.3)	1(11.1)	3(33.3)	2(22.2)	-	9(100.0)
합계	11(7.5)	21(14.3)	34(23.1)	37(25.2)	42(28.6)	145(100.0)

표 6-18. '제조국가'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향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식품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됨	10(32.3)
가공지만 표시하면 됨	6(19.4)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 함께 표시	6(19.4)
일부 품목(예: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 함께 표시	9(29.0)
합계	31(100.0)

■ 가공제품의 원료 사용

○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4.8%). 이 밖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29.8%).

표 6-19.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안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42(29.8)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이전단계 투입원료명만 표시	18(12.8)
원산지명만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32(22.7)
현재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	49(34.8)
합계	141(100.0)

■ 표시 인지

○ 응답업체의 54.8%는 현재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답한 14개 업체는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하거나(57.1%)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28.6%).

표 6-20.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인지 가능 수준

단위: 개, %

전혀 눈에 띄지 않음	눈에 띄지 않는 편임	보통	눈에 잘 띄는 편임	매우 눈에 잘 띔	합계
1(0.7)	13(9.0)	51(35.4)	69(47.9)	10(6.9)	144(100.0)

표 6-2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인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함	4(28.6)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해야 함	8(57.1)
중요품목만 표기	2(14.3)
기타	-
합계	14(100.0)

■ 표시 활성화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지도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44개 업체(30.3%)이며, 업계의 자율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업체도 39개(26.9%)였다.

표 6-2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표시 위반시 사실공개	14(9.7)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14(9.7)
표시가 적정한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검사강화	44(30.3)
업계의 자율적 관리 강화	39(26.9)
주기적 홍보 및 교육	30(20.7)
기타	4(2.8)
합계	145(100.0)

3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이용실태 평가[2)]

3.1. 표시 이용실태 및 인식

○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62.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55.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가공식품 원산지에 대해서는 46.8%로 음식점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다.

2)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한 소비자의 연령대는 20대 6.1%, 30대 24.0%, 40대 33.5%, 50대 26.1%였다. 고졸 이하가 29.8%, 대졸 이상이 70.2%이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는 200만원 미만 8.6%,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9.6%,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42.8%, 600만원 이상이 11.4%였다.

표 6-23.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가공식품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농산물 원산지
잘 앎	234(46.8)	314(62.8)	276(55.2)
보거나 들어본 적 있음	254(50.8)	185(37.0)	222(44.4)
잘 모름	12(2.4)	1(0.2)	2(0.4)
합계	500(100.0)	500(100.0)	500(100.0)

○ 소비자의 93.6%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주요 이유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48.9%)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48.3%)가 주로 제시되었다. 가공업체와 유사하게 국내 농업 보호를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 이유라고 본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2.4%).

표 6-24.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단위: 개, %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	1(0.2)	31(6.2)	258(51.6)	210(42.0)	500(100.0)

표 6-25.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 이유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29(48.9)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226(48.3)
국내 농업 보호	11(2.4)
기타	2(0.4)
합계	468(100.0)

○ 소비자가 제품 구매나 요리 주문시 원산지를 확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76.6%가 확인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유사한 수준이며(78%) 농산물 원산지 표시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85%). 소비자는 수입산 사용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미신뢰를 원산지를 확인하는 주요 이유라고 답하였다.

표 6-26. 구매시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

단위: 명, %

구분	확인하지 않음	확인하지 않는 편임	보통	확인하는 편임	항상 확인함	합계
가공식품	13(2.6)	20(4.0)	84(16.8)	237(47.4)	146(29.2)	500(100.0)
음식점	1(0.2)	18(3.6)	91(18.2)	284(56.8)	106(21.2)	500(100.0)
농산물	3(0.6)	10(2.0)	62(12.4)	270(54.0)	155(31.0)	500(100.0)

표 6-27. 구매시 원산지 확인 주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가공식품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농산물 원산지
원료 원산지에 따른 맛 차이	10(2.6)	17(4.4)	27(6.4)
수입산 사용 제품의 안전성 · 품질 미신뢰	264(68.9)	288(73.8)	317(74.6)
구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 확인	109(28.5)	82(21.0)	81(19.1)
기타	-	3(0.8)	-
합계	383(100.0)	390(100.0)	425(100.0)

○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는 34.8%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유사한 수준이었다(36.8%).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15.4%)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34.4%),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기(32.1%)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표 6-28.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신뢰 안함	신뢰하지 않는 편임	보통	신뢰하는 편임	항상 신뢰함	합계
가공식품	8(1.6)	78(15.6)	240(48.0)	170(34.0)	4(0.8)	500(100.0)
음식점	33(6.6)	161(32.2)	229(45.8)	76(15.2)	1(0.2)	500(100.0)
농산물	9(1.8)	67(13.4)	240(48.0)	181(36.2)	3(0.6)	500(100.0)

표 6-29.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미신뢰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26(11.8)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 발생 가능	71(32.1)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체계 구축 미흡	76(34.4)
정부의 제대로 된 표시 단속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48(21.7)
합계	221(100.0)

○ 소비자들은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가 가공업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도 기여하며(86.2%),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83.8%)와 선택권 보장(86.0%)에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기여도는 4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6-30.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기여도

단위: 개, %

구분	전혀 기여 안함	기여하지 않는 편임	보통	기여하는 편임	매우 기여함	합계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섭취	3 (1.0)	12 (7.8)	54 (44.2)	315 (39.8)	116 (7.2)	500 (100.0)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	3 (0.6)	12 (2.4)	54 (10.8)	315 (63.0)	116 (23.2)	500 (100.0)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3 (0.6)	6 (1.2)	72 (14.4)	321 (64.2)	98 (19.6)	500 (100.0)
소비자 선택권 보장	3 (0.6)	3 (0.6)	64 (12.8)	308 (61.6)	122 (24.4)	500 (100.0)

3.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평가

3.2.1. 대상 품목

○ 현재 211개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84.2%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자주 먹는 식품(19.4%), 소비량이 많은 식품(14.9%) 등 평소 섭취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주로 제시하였다.

표 6-3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 조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축소	5(1.0)
대상 품목수 확대	421(84.2)
현행대로 운영	27(5.4)
잘 모르겠음	47(9.4)
합계	500(100.0)

표 6-32. 원산지 표시 필요 품목

단위: %

구분	비중
자주 먹는 식품	19.4
소비량이 많은 식품	14.9
가공식품 원료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품	3.5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	11.8
가공공정이 단순하여 원료 농수축산물에 가까운 식품	5.0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가공식품의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식품	9.0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품목	11.3
기타	25.1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3+2순위×2+1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비중을 계산함.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 중에서 식염이 89.2%로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 당류(79.0%), 커피(68.2%), 주류(61.2%)의 순이었다.

표 6-33. 예외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가 없는 편임	보통	필요가 있는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커피	3(0.6)	46(9.2)	110(22.0)	237(47.4)	104(20.8)	500(100.0)
주류	6(1.2)	32(6.4)	156(31.2)	208(41.6)	98(19.6)	500(100.0)
당류	3(0.6)	8(1.6)	94(18.8)	227(45.4)	168(33.6)	500(100.0)
식염	1(0.2)	4(0.8)	49(9.8)	213(42.6)	233(46.6)	500(100.0)

3.2.2. 표시 대상 원료 수

○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의 개수에 대해서는 현행의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0%,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34.2%였다.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다소 낮았다(28.2%).

표 6-34.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 없음	8(1.6)
주원료 위주로 표시하는 현행대로 추진 필요	141(28.2)
현행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	180(36.0)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	171(34.2)
합계	500(100.0)

3.2.3. 혼합원료

○ 현재의 원산지 표시 규정은 동일원료에 대해 3개국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2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든 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소비자가 65.6%에 달했다. 현행대로 2개국을 표시하는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절반 수준인 33.2%에 불과하였다.

표 6-35. 3개 국가 이상의 원료 혼합 사용시 2개 '국가명' 표시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1개국만 표시해도 무방	6(1.2)
현행대로 2개국 표시	166(33.2)
모든 국가 표시	328(65.6)
합계	500(100.0)

3.2.4. 예외조항

■ 혼합비율 생략

○ 특정 원료의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원산지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현재 표시 규정에 대해서 소비자의 63.4%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6-36.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103(20.6)	214(42.8)	87(17.4)	82(16.4)	14(2.8)	500(100.0)

■ 수입산 표시

○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으로 표시하도록 한 표시 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2.8%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수입산'표시 규정을 '수입국가명'표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95.0%가 찬성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48.6%,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8.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7. '수입산' 표시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118(23.6)	246(49.2)	84(16.8)	47(9.4)	5(1.0)	500(100.0)

표 6-38.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단위: 명, %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합계
-	1(0.2)	24(4.8)	233(46.6)	242(48.4)	500(100.0)

표 6-39.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 방안에 선호도

단위: %

구분	빈도수(%)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48.6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38.5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6.8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6.1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2+2순위×1)

3.2.5. 기타 표시 개선사항

■ 제조국가 표시

○ 원료의 제조국(중간가공지)에 대한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79.8%의 소비자가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었다.

표 6-40.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에 대한 의향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식품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됨	14(2.8)
가공지만 표시하면 됨	6(1.2)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 함께 표시	399(79.8)
일부 품목(예: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 함께 표시	81(16.2)
합계	500(100.0)

■ 가공제품의 원료 사용

○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비자의 72.0%가 찬성하였다.

표 6-41.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향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1(6.2)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이전단계 투입원료명만 표시	24(4.8)
원산지명만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84(16.8)
현재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	360(72.0)
기타	1(0.2)
합계	500(100.0)

■ 표시 인지

○ 소비자의 49.2%는 현재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비자들은 원산지의 인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글씨를 크게 하거나(35.0%),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하고(32.9%), 글씨 색깔을 눈에 띄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9%).

표 6-42.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인지 가능 수준

단위: 명, %

전혀 눈에 띄지 않음	눈에 띄지 않는 편임	보통	눈에 잘 띄는 편임	매우 눈에 잘 띔	합계
23(4.6)	223(44.6)	175(35.0)	74(14.8)	5(1.0)	500(100.0)

표 6-43. 가공식품 원산지 인지수준 향상을 위한 표시 개선 방향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함	86(35.0)
글씨 색깔을 눈에 띄게 바꾸어야 함	76(30.9)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해야 함	81(32.9)
기타	3(1.2)
합계	246(100.0)

■ 표시제에 대한 기타 의견

○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시 어려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현재의 표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고(39.4%), 원산지가 표시된 원재료수가 적어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28.0%).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5.0%), 행정지도 및 검사 강화(2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6-44.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시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내용이 어려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46(9.2)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재료수가 적어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못함	140(28.0)
원료 원산지 표시항목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움	55(11.0)
원산지 표시사항이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59(11.8)
원산지 표시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음	197(39.4)
기타	3(0.6)
합계	500(100.0)

표 6-45.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표시 위반시 사실공개	100(20.0)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225(45.0)
표시가 적정한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검사 강화	134(26.8)
업계의 자율적 관리 강화	20(4.0)
주기적 홍보 및 교육	18(3.6)
기타	3(0.6)
합계	500(100.0)

4 시사점

○ 조사결과 나타난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주요 논의 쟁점인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 규정 예외조항, '제조국' 표시 등에 대한 소비자와 가공식품업체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현재 211개 품목이다. 소비자는 대체로 대상 품목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공식품업체는 원산지 표시가 꼭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표시 예외 품목 중에서는 가공식품업체와 소비자 모두 식염이 가장 원산지 표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의 확대에는 가공업체와 소비자 간에 견해 차이가 상당하다. 식염과 같이 가공업체와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은 예외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표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6-46. 가공업체 및 소비자의 쟁점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주요 의견	
		가공업체	소비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표시 대상 품목 수	대상 품목 축소: 60.5%	대상 품목 확대: 84.2%
	표시 예외 품목	식염에 표시 도입: 53.8%	식염에 표시 도입: 89.2%
표시 대상 원료 및 국가 수	표시 대상 원료 수	현행 규정 유지: 73.3%	원료 수 확대: 70.2%
	표시 대상 국가 수	현재 규정 적절: 45.0%	모든 국가 표시: 65.6%
원산지 표시 예외 조항	'수입산' 표시 규정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 반대: 65.9%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 찬성: 95.0%
	혼합비율 생략 규정	현행 규정 적절: 40.0%	현행 규정 부적절: 63.4%
제조국(중간 가공지) 표시		표시 도입 찬성: 53.8%	가공지와 원산지 함께 표시: 79.8%

4.2.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와 국가 수 조정

○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개수의 조정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간 견해 차가 뚜렷하다. 소비자는 표시 대상 원료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업체는 주로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또한 현재 3개국 이상의 원료가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의 원산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대부분 이 규정이 적절하거나 오히려 표시대상국을 줄여야 한다는 보는 반면, 소비자는 모든 국가에 대해 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표시대상 원료 개수와 혼합원료의 표시 대상 국가 수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의 확대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 공간, 글씨 크기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업체와 소비자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3. 원료 원산지 표시 예외조항 개선

4.3.1. '수입산' 표시 규정

○ 현재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전환하여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체의 경우 대체로 반대하는 반면, 소비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 가공업체는 표시규정을 전환할 경우 원료 변경과 원산지 표시 변경 시점을 맞추기 어려우며, 기존의 표시설비로는 전환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표시 전환에 의해 원료저장시설, 인쇄기기 등 설비 추가, 포장재 제작 및 재고 처리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국가명' 표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큰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수입산' 표시 규정 전환 방안에 대해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높다. 그러나 '수입산' 표시 규정의 변경시행에 따라 원가부담이 큰 대기업의 경우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모두 열거하거나,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수입국가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은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며,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

○ 소비자의 식품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수요와 수입 원료에 대한 이력추적 등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수입산' 표시 규정 예외 조항은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업체의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 표시로 전환할 경우에는 업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표시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변경시 유예기간도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줄 필요가 있다.

4.3.2. 혼합비율 생략 규정

○ 현재 원산지 표시제 규정에서는 특정 원료의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원산지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하는 반면, 소비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다. 해당 규정의 개정은 업체와 소비자 간 의견 차이와 함께 '수입산' 표시 규정의 개정과 연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혼합비율' 생략 규정을 개정할 경우 이에 대한 유예기간은 '수입산' 표시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4.4. 제조국(중간 가공지) 표시

○ 2008년에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수입된 '새우깡'의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원료 원산지 외에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 표시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졌다. '제조국(중간 가공지)'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업체의 경우 월 매출액 규모가 적을수록 긍정적이다. 그러나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대체로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은 '제조국명' 표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입 범위와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편이다.

○ 그러나 2008년의 가공식품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가공식품업계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 소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표시제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길 원한다. 그러나 식품업체의 경우 표시제의 개선에 수반되는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농업인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는 소비자에 대한 필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표시를 이행하는 당사자인 식품업계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표시제 개선에 따른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이 막대한 경우 소비

자에게 이것이 전가될 수 있으며, 정보의 과다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와 가공식품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